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2031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성락인, 임호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방현성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9.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2. 1. 20. 선고 2021가소741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주문 제2항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9,330,475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는 사람들로, 2015. 4.경 E이라는 상호로 피고와 동업을 하는 F으로부터 운동화 3,300켤레를 제작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3.부터 2015. 11. 3.까지 합계 83,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동화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F의 하수급인인 G에게 35,374,075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F의 동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G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미지급 잔금을 차감한 부당이득금 29,330,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에게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도록 명의대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과 E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G에게 35,374,075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원고의'는

‘원고들의’의, 주문 제2항 ‘원고가’는 ‘원고들이’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윤영수, 판사 서동인